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5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욱)

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「소득 및 재산조사」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만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주요골자

- 증원인원 : 18명
- 조정직급 : 사회복지직 9급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증원되는 18명 모두 사회복지사인가?	○ 18명 모두 신규로 증원되는 것이며 모두 사회복지사 9급으로 일반공채하는 것임
○ 증원되면 각 동 사회복지사 부족이 해소되는가?	○ 거의 해소되며 모두 동에 배치할 계획이고 생보자가 많은 동에 배치할 예정임
○ 사회복지사가 관장하는 주민수는 몇 명 정도인가?	○ 보호대상이 400세대이며 생보자는 200세대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10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행정자치부로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「소득 및 재산조사」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승인해 줌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만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증원인원 : 18명
- 조정직급 : 사회복지직 9급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874명”을 “1892명”으로 하고 제1호 “1850명”을 “1868명”으로 한다.

부칙 제2조제1항 중 「표1」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란 정원의 총수 “2015명”을 “2033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“1991명”을 “2009명”으로 하며 「표2」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란 정원의 총수 “1946명”을 “1964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“192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874</u>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850</u>명</p>	<p>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원)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892</u>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868</u>명</p>

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: 24명 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(생략) 부 칙 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(생략) [표1]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		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: 24명 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(현행과 같음) 부 칙 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(현행과 같음) [표1]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	
구 분	정 원	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2,015명	정원의 총수	2,033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1,991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2,009명
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	24명	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	24명
[표2]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		[표2]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	
구 분	정 원	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1,946명	정원의 총수	1,964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1,922명	1. 집행기관의 정원	1,940명
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	24명	2.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	24명
제2조 ②(생략) 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(생략)		제2조 ②(현행과 같음) 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(현행과 같음)	